

국제교류센터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
센터의 경영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

1 인권영향평가 개요

1 2021년 개선과제 추진현황 평가

○ 중점 보완사항

평가지표		담당부서
① 인권경영체제 구축	이행과제	
◦ 인권경영현장 정기적 검토	◦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인권경영현장 개선	경영기획팀
◦ 인권경영 공유 및 개선평가체계 구축	◦ 인권경영 개선활동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및 개선활동 평가체계 구축	경영기획팀
◦ 구체절차 매뉴얼 수립	◦ 구체절차에 대한 세부 매뉴얼 수립	경영기획팀
② 산업안전 보장	이행과제	담당부서
◦ 산업안전 관리 매뉴얼 수립	◦ 산업안전, 위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수립	경영기획팀

○ 평가기준

-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

구분	평가방법	비고
증빙자료	◦ 지표 내용에 해당하는 시행내용 증빙자료 자료를 작성	
예	◦ 현황 내용이 해당 지표 내용과 일치하며 시행내용 증빙자료 명확한 경우	
보완필요	◦ 현황 내용에 보완을 거치면 '예'로 답할 수 있는 경우 ◦ 증빙자료가 있으나 근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	
아니요	◦ 증빙 내용이 해당 지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	

② 2022년 '기관운영', '주요사업' 인권영향평가

○ 평가대상

- (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) 10개 분야, 27개 중분류, 118개 지표
 -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,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, 강제노동의 금지
- (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) 1개 사업, 4개 중분야, 20개 지표
 - 공정운영, 교류국 주민의 사회·문화적 권리 보장, 교류국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진, 사업 후속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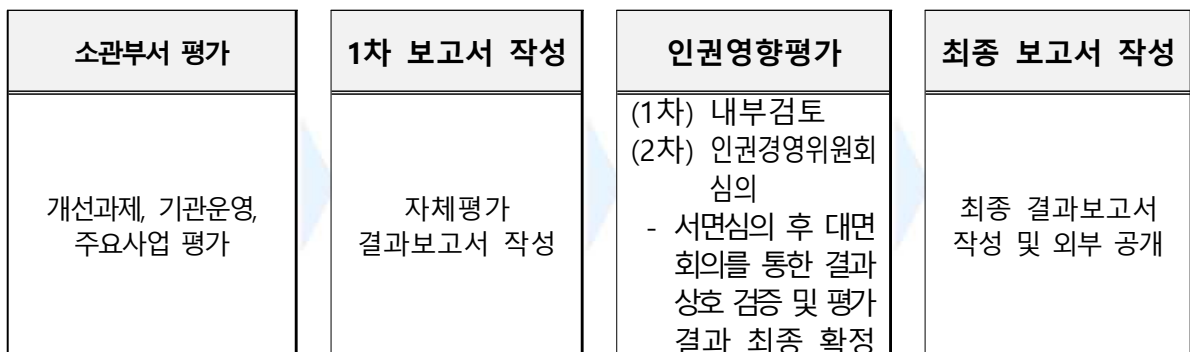
○ 평가기간 : 2022년 11월

○ 평가방법

- (1차)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
 - 소관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
- (2차)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확정
 - 서면심의 후 대면 회의를 통한 최종 평가 확정

구 분	1차	2차
방 법	소관부서 점검·평가	1차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
주 체	해당 주관부서	인권경영위원회
내 용	◦ 개선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증빙 자료 제출 ◦ 자체평가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	◦ '21년 개선과제 이행 결과 평가 ◦ 체크리스트 자체 평가 결과 타당성 및 검토·수정 ◦ 취약요인 및 개선·보완 사항 제언 등

○ 평가절차



○ 평가기준

- (기준)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며 체크리스트별 이행률로 평가
- (평가산식) (당해연도 지표별 답변 결과/당해연도 해당지표 합계)×100

구분	평가방법	비고
증빙자료	- 지표 내용에 해당하는 ① 관련 규정과 ② 시행내용 증빙자료 두가지 자료를 작성 - 부득이하게 두가지 중 하나의 자료만 있는 경우 하나의 내용만 작성	
예	- 현황 내용이 해당 지표 내용과 일치하며 ① 관련 규정과 ② 시행내용 증빙자료 두 개가 모두 명확한 경우 *(증빙이 불가능한 경우) 관련 규정 명시만으로 인정 *(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) '계획서', '결과보고서' 등 증빙자료 제공시 인정	
보완필요	- 현황 내용에 보완을 거치면 '예'로 답할 수 있는 경우 - 증빙자료가 있으나 근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	
아니요	증빙 내용이 해당 지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	
정보없음	미래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지표 내용을 증빙할 만한 관련 규정이나 시행내용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	
해당없음	관련 규정이나 시행내용이 없으며 센터와 관련 없는 지표 (기관에서 향후 5년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)	

2 2021년 개선과제 평가 결과

▶ 개선과제 평가 결과 이행률 100% 달성으로 나타남

□ 인권경영체계 구축

- 인권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한 인권경영헌장이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검토되었으며 '23년 센터 규정집 인권경영헌장이 개선·반영될 예정임
- 인권침해 발생시 조속한 처리와 인권침해 재방지를 위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, 관련 내용을 전직원 대상 공유하고 있음

□ 산업안전보장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,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직원 공유하고 있음

3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

□ 지표별 평가위원 구성 및 점수산출 결과

-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▶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이행을 99% 달성으로 인권경영 이행 실태는 양호함

-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▶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이행을 100% 달성으로 인권경영 이행 실태는 양호함

□ 평가결과 활용

- 환류 및 개선조치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취약분야는 개선과제별 업무분장 후 이행실적 관리

- 인권경영 평가보고서 대외공개

- 인권영향평가 결과, 인권경영체계, 부정적 인권영향 방지조치 수립 및 이행과제 추진 현황 등
- 투명한 인권경영 및 의견수렴을 위해 최종보고서 홈페이지 공개

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【종합의견】

- (강점) 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음

- 임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‘산업재해’, ‘중대재해’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긴급 상황 대처요령을 매뉴얼화 하여 전직원 공람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, 중대산업재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
- (약점) 사회적 인권이슈인 폭언, 폭행,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 논란 등으로 ‘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’를 인권영향평가 지표로 추가·개선 필요
 - 센터의 인권경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개 필요
 - 센터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직원 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필요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【종합의견】

- (강점)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농촌 일손돕기, 유기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일원으로서 소속감 제고 및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실현 제고
 - 해외교류국 대상 지속 가능한 인권보장을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센터 인권경영실현 확대
 - 해외 교류사업 추진시 참여 방법, 선발 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

4 개선과제 및 환류체계

○ (개선과제) 중점 보완사항 이행

평가지표		담당부서
① 인권경영체제 구축	이행과제	
- 인권영향평가지표 정기적 검토	- 사회적 인권이슈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반영 검토 여부	경영기획팀
- 인권경영 활동 공유	-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이외 인권경영위원회 등 인권경영 활동 홈페이지 공개	경영기획팀
- 인권관련 협의대상 확대	-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 한다.(인권침해 만족도 조사, 계약상대자와의 인권경영 준수서약서 징구 등)	경영기획팀

○ (환류체계) 중점 보완사항 담당부서별 업무분장 부여
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인권경영체제 구축 노력
- 차년도 개선실적에 반영하여 인권경영 개선도 향상 제고

☐ **2021년 개선과제 추진현황 평가 결과**

지표명	개선과제		답변결과			비고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
인권경영 체계 구축	1	인권경영현장은 정기적 검토·보완이 되었는가?	○			
	2	인권경영 평가를 공유하고 및 개선평가 체계 구축을 구축하였는가?	○			
	3	구제절차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였는가?	○			
산업안전 보장	4	산업안전, 위생 관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였는가?	○			
	소 계					

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

1. 인권경영체제 구축						
분야 1 인권경영헌장 선포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.	○				
2	인권경영헌장은 센터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.	○				
3	센터의 인권경영헌장은 센터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.	○				
4	센터의 인권경영헌장은 해당 센터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.	○				
5	인권경영헌장은 공개적이며,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.	○				
6	인권경영헌장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.	○				
소 계						

1. 인권영영체제 구축						
분야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근거로 한다.	○				
2	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센터 내·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.	○				
3	센터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.		○			
4	협력기관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.	○				
5	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
소 계						

1. 인권경영체계 구축						
분야 3	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.	○				
2	센터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.	○				
3	센터는 인권준수를 위한 감시기구 및 제도를 운영중이다.	○				
4	센터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	○				
5	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, 센터 차원에서 대응한다.	○				
소 계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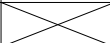
1. 인권영영체제 구축							
분야 4		인권경영 성과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.	○					
2	센터는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·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.	○					
3	센터는 인권경영 개선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아 그 성과를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.	○					
4	센터의 인권경영 영향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.	○					
5	센터의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객관적이고 적정하다	○					
6	센터의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권경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1. 인권영영체제 구축							
분야 5		구제절차 마련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.	○					
2	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.	○					
3	구제 접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.	○					
4	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.	○					
5	피해자가 센터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.				○		
6	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,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2. 고용상의 비차별						
분야 1		고용상 비차별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2	센터는 근로자 모집·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.	○				
3	센터는 임금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4	센터는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.	○				
5	센터는 근로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6	센터는 근로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소 계						

2. 고용상의 비차별						
분야 2		고용상 남녀비차별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여성근로자를 모집·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2	센터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.	○				
3	센터는 임금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4	센터는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.	○				
5	센터는 근로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6	센터는 근로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7	센터는 여성근로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.	○				
소 계						

2. 고용상의 비차별						
분야 3		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	○				
2	센터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센터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	○				
3	센터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한 보수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	○				
소 계						

2. 고용상의 비차별							
분야 4		외국인 근로자 비차별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.	○					
2	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,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.	○					
3	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현지 임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
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						
분야 1	결사·단체교섭 자유 보장 일반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.	○					
2	센터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	○					
3	센터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					○	
4	센터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
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					
분야 2		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	○				
2	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.	○				
3	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.	○				
4	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					○
5	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.					○
소 계						
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						
분야 3	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평가제외)							
1	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.					○	
2	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					○	
3	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.					○	
4	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.					○	
5	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
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						
분야 4		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센터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.	○					
2	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4. 강제 노동의 금지						
분야 1		강제노동 금지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.	○				
2	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,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	○				
3	센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.	○				
4	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.	○				
5	근로자는 퇴사 시 사전통지 또는 의향 표시를 1개월 이전에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.	○				
소 계						

4. 강제 노동의 금지						
분야 2		협업기관,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강제노동 예방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협업기관, 용역수행 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.	○				
2	협업기관, 용역 수행 업체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,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.	○				
3	인신매매,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, 기관 등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,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.				○	
소 계						

5. 아동노동의 금지						
분야 1		연소자 고용 금지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	○				
2	센터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	○				
3	센터는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	○				
4	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.					○
5	센터는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,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.	○				
6	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,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.					○
7	연소근로자(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)를 고용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.					○
소 계						

6. 산업안전 보장							
분야 1		작업장 안전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.	○					
2	센터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,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.	○					
3	사무실 환기와 실내온도, 조명, 정수기, 세면대, 의자,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6. 산업안전 보장							
분야 2		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임산부,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 되고 있다.	○					
2	센터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, 18세 미만자를 도덕상·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.	○					
3	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	○					
4	장애인들이 센터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.				○		
소 계							

6. 산업안전 보장							
분야 3		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
2	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,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 되고,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.	○					
3	사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.	○					
4	센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6. 산업안전 보장							
분야 4		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	○					
2	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7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						
분야 1		협력기관, 용역 수행 업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협업기관, 용역 수행 업체 등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.	○					
2	센터는 협업기관, 용역 수행 업체 등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.				○		
소 계							

7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						
분야 2		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				○		
2	센터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.	○					
3	센터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,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.					○	
4	센터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,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

8. 지역주민의 인권보호							
분야 1		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관련 법령에서 센터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.	○					
2	센터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,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.					○	
3	센터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

8. 지역주민의 인권보호							
분야 2		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.	○					
2	센터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.	○					
3	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				○		
소 계							

9. 환경권 보장							
분야 1	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국내·외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, 사업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.	○					
2	센터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.	○					
3	센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10. 소비자 인권 보호						
분야 1		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
점수 (100%)						
1	센터는 용역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의 재산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.	○				
2	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서비스 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.	○				
3	센터의 사업 및 서비스 홍보 시 허위나 과장,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하지 않는다.	○				
4	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사업내용, 서비스 등에 대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	○				
5	사업내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,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.	○				
소 계						

10. 소비자 인권 보호							
분야 2		소비자 사생활 보호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센터가 수집,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	○					
2	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 되었으며, 공개되어 있다.	○					
3	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,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.	○					
4	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,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.	○					
5	고객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	○					
6	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

1. 해외 교류사업						
분야 1	공정운영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점수 (100%)						
1	사업 수행자 선정 공고 시 선정방법 및 진행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.	○				
2	차별적 요소 없는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해 적법절차를 관계 부서에 의뢰하였다.	○				
3	사업 수행자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.	○				
4	센터는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및 부패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.	○				
5	센터는 사업 수행자의 과업 이행 시 전라북도국제교류 센터의 인권경영을 존중하고, 인권존중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 하였다.	○				
6	센터는 사업 수행자의 과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다.	○				
7	센터는 사업수행자에 대한 지급을 특별한 지급 불가 사유가 없는 한 원활히 진행 하였다.	○				
8	센터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, 사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 수행자의 피해를 방지하였다.	○				
소 계						

2. 해외 교류사업							
분야 2	교류국 주민의 사회·문화적 권리 보장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류국 주민에게 전라북도, 전라북도 전통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	○					
2	센터는 전라북도에 대한 해외 교류국 주민의 인지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	○					
3	센터는 현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인지제고를 위해 교류국의 기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.	○					
4	센터는 교류국 주민, 해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누구나 한국 문화를 접하고,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	○					
5	센터는 교류사업 운영 시, 언어의 차이로 참가자 간 소통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시 언어권별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.	○					
6	센터는 사업대상 교류국 주민 및 사업관계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3. 외국인 친화 사업							
분야 3	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증진	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도내·외 외국인들이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, 국제행사, 주요명소 등 정보를 원활히 습득할 수 있도록 출판물, SNS 등 다양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	○					
2	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.	○					
3	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전라북도 소속감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	○					
4	센터는 국내외 외국인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, 전라북도 거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4. 해외 교류사업							
분야 4		사업 후속조치				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 (100%)							
1	센터는 교류국 지역민의 지속 가능한 인권 보장을 위한 후속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.	○					
2	센터는 교류국 지역민의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기관과 사업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